#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77

발의연월일: 2020. 6. 8.

발 의 자:정춘숙·김민기·홍정민

진선미 · 홍기원 · 권칠승

한정애 · 이용빈 · 기동민

이장섭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해 정부는 민선지방자치 출범 이후 변화된 지방행정환경을 반영하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바 있음.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는 인구수가 광역자치단체의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기초자치단체로 분류되어 획일적인 규정을 적용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시민들은 국가 행정·복지서비스의 역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임.

또한 인구 50만 이상으로서 주간인구, 사업체 수, 법정민원 수 등 종합적인 행정 수요자의 수가 100만 이상인 대도시, 인구 50만 이상으로서 도청 소재지인 대도시도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행정수요자의 수가 100만 이상인 대도시, 인구 50만 이상으로 도청소재지인 대도시에 대해 행정명칭(특례시)을 부여하고, 행정, 재정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그특성을 고려해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지방자치분권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175조제1항 및 제2항).

#### 법률 제 호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각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인구 100만 이상인 대도시
- 2. 인구 50만 이상이며 도청소재지인 대도시
- 3. 행정수요자의 수가 100만 이상인 대도시
- ② 특례시의 인정 세부기준 및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인구에 대한 산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5조(대도시에 대한 특례인정)	제175조(대도시에 대한 특례인정)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	<u> </u>
치시를 제외한 <u>인구 50만 이상</u>	<u>다음 각 호의 어</u>
<u>대도시</u> 의 행정, 재정운영 및 국	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도시(이
가의 지도·감독에 대하여는 그	<u>하 "특례시"라 한다)</u>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	
<u>&lt;신 설&gt;</u>	<u>1. 인구 100만 이상인 대도시</u>
<u>&lt;신 설&gt;</u>	2. 인구 50만 이상이며 도청소
	재지인 대도시
<u>&lt;신 설&gt;</u>	3. 행정수요자의 수가 100만 이
	<u>상인 대도시</u>
<u>&lt;신 설&gt;</u>	② 특례시의 인정 세부기준 및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인구
	에 대한 산정기준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